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2
----------	--------

제안년월일 : 2024년 1월 일
제안자 : 강서구청장

1. 제안이유

- 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육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나. 강서청소년회관 민간위탁 사무 내용

- 강서청소년회관 관리·운영 전반
- 청소년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
- 청소년아지트 운영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 아동참여예산 제안사업
- 아동 놀권리 증진사업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위탁 사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청소년 육성에 공신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라. 강서청소년회관 현황

- 시설명: 강서청소년회관
- 위치: 강서구 공항대로42길 23-19
- 면적: 1,607.44㎡(지하1층~지상3층)
- 정원: 350명
- 개관일: 1993. 5. 22.
- 주요시설: 청소년아지트, 스마트체육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등
- 위탁업체: (사)홍사단
- 인력현황: 14명

마. 위탁기간: 5년(2024. 5. 1.~2029. 4. 30.)

바. 선정방법: 공개경쟁모집

사. 소요예산: 5,703,392천원(국비 75,034천원, 시비 30,000천원, 구비 5,598,358천원)

아. 위탁운영체 신청 자격: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자.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2024년 2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2024년 3월
- 협약 체결: 2024년 4월

강서청소년회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강서청소년회관 민간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매해 인건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4년~2028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세출	1,096,465	1,120,529	1,140,988	1,161,958	1,183,452	5,703,392
	사업운영비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096,465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619,498, 13명)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153,555) 	773,053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운영비(237,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용역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시설관리비 등 각종 부대 경비 청소년아지트 운영비(29,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아지트 시설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267,202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5,00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25,368)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842) 아동참여위원회 운영(5,000) 아동참여예산 제안사업(15,000) 아동 놀권리 증진사업(5,000) 	56,210

5. 재원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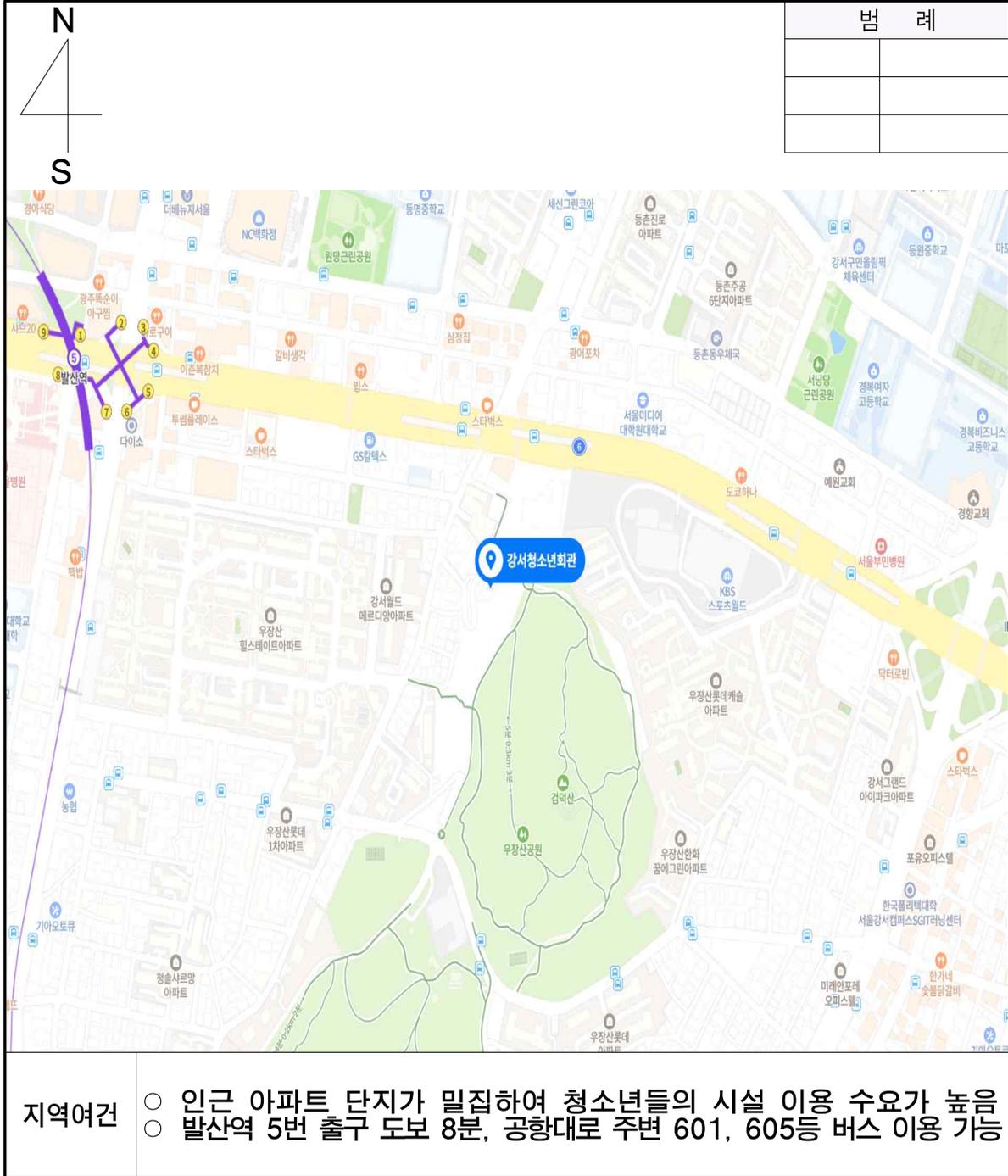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국비	12,684	15,092	15,417	15,750	16,091	75,034
	시비	5,000	6,250	6,250	6,250	6,250	30,000
	구비	1,078,781	1,099,187	1,119,321	1,139,958	1,161,111	5,598,358
	합계	1,096,465	1,120,529	1,140,988	1,161,958	1,183,452	5,703,392

6. 작성자: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담당자: 행정8급 최준영 02-2600-6970)

시 설 위 치 도

(S = 1 : 10,000)



현 장 사 진



외부 정면 사진



청소년 아지트(지하 1층)



스마트 체육관(1층)



크리에이터 스튜디오(3층)

붙임 4

관계 법령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개정 2020.7.15.)
7.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